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1700160

신 청 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피신청인: 장재호(Jae-Ho Jang)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상암동)

대리인: 수안특허법인(변리사 서수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1길 8, 2층(역삼동,

형정빌딩)

피신청인: 장재호

서울특별시

분쟁 도메인이름은 “jtbc.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가비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B동 4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7. 6. 13.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7. 7. 4.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7. 7. 6.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7. 7. 6.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7. 7. 26.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7. 7. 26.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7. 8. 1.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정찬모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같은 날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7. 8. 3.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 3. 사실관계

신청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는 "jtbc" 표장으로 2011년부터 방송을 시작한 국내 유명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로 알려진 기업이다. 신청인은 2012.10. 이래 국내에서 "jtbc" 표지를 전 상품류에 걸쳐 상표등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현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임은 후이즈 정보에 의해서 확인되나 1999.12. 최초등록자가 누구였는지 피신청인은 언제부터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

신청인은 "jtbc" 표장은 자신이 2011년 이래 사용하여 현재는 국내에서 주지, 저명한 등록상표이며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이와 요부가 동일하며,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아무런 권리나 적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무단으로 신청인의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웹사이트의 주체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

신청인의 등록상표 “jtbc”와 본 건 도메인이름 “jtbc.com”에서 최상위도메인 확장자인 .com을 제외한 요부가 동일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피신청인에게 어떤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신청인이 한국특허정보원 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이 “jtbc”문자열을 포함한 상표를 등록하였는지를 검색하고 피신청인을 검색어로 한 인터넷 검색을 행한 결과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떤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도 없다는 것을 보인 것은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분쟁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주지, 저명한 등록표장과 동일하며, 일견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한때 신청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비록 분쟁 도메인이름의 최초등록일이 신청인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보다

앞서기는 하지만 피신청인이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D. 소결

이상으로부터 신청인이 규정 제4조 (a)항의 모든 요건을 입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인 <jtbc.com>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

1인 행정패널

정찬모

결정일: 2017년 8월 16일